

『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4년 8월 21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4년 8월 27일

라. 상정일자 : 2014년 9월 11일

제19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경제통상국장 황 종 철

나. 제안이유

- 제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관광산업의 육성방안이 정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반영됨에 따라 투자지원 대상 산업 범위를 확대하고 공격적 투자유치를 위한 대규모 투자 기업 특별지원 상향조정 및 보조금 지급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강행규정 마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투자지원 대상범위에 “관광사업 시설투자비” 포함하여 지원대상 확대 조항 신설(안 제23조의4)
-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가능 (안 제26조제1항)
- 보조금 지급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한 채권확보 조항 신설 (안 제29조제2항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
- 예산조치 : 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」 첨부
-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기 타 : 해당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용 우

☐ 본 『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은,

- 관광사업의 육성방안이 정부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반영됨에 따라,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관광사업을 투자지원 대상범위에 시설투자비(부지매입비와 건축비, 시설장비구입비, 기반시설 설치비)를 포함하여,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한도를 최대 100억원까지 확대함으로써 투자유치를 촉진하고,
- 보조금 지급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한 채권확보 조항을 신설하여 채권확보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